

##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백 창 현\*

### 국문요약

한국의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50여 종류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그동안 인구의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권이 그 원칙과 취지 등이 무시된 채 다소 무분별하게 부여되어온 측면도 없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50여 종류의 특별사법경찰 중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제도적 취지 및 원칙, 직무범위, 현실적인 수사권 행사 및 업무처리실적 등의 측면에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의 축소 혹은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에 ① 사법경찰권을 일부 폐지하는 방안 ② 긴급성의 원칙에 기한 완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권도 폐지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들의 특별사법경찰권을 일부 조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사법경찰권 부여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이므로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게 부여된 유명무실한 사법경찰권은 수사권 남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법학박사

## I. 들어가며

현행법상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일반사법경찰은 일반적인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고,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사법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만 그것을 가지는 것이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은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이라 약칭함) 등으로서,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그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50여 종류의 특별사법경찰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은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1)</sup>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일부 분담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sup>2)</sup>

한국에서 초기의 특별사법경찰은 삼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만을 담당하였고, 그 수도 10여 종류에 불과하였다. 1956년에 최초로 제정된 특사경법(법률 제380호)과 그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삼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우 곤란하므로 특수행정분야를 직접 담당하여 그 방면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1) 그 외에 예외적으로 대통령경호실법에도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경호공무원에게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경호업무수행 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17조의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는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위반범죄에 대하여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일정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Ⅱ」, 법무부, 1990, 109면; 홍효식, 「프랑스 사법경찰의 수사방법 연구」, 대검찰청, 2006, 211면.

목적으로 검찰청서기·서기보, 형무소장, 소년원장, 산림주사·주사보, 중앙임업시험장 공무원, 농림부 산림국 공무원, 지방전매청 공무원, 보건사회부 공무원, 선장과 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그 시초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인구의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 현대 사회복지국가 이념의 강조 등과 더불어 행정업무와 조직이 비약적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비례하여 각 주무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조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특별사법경찰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교도소장, 소년원장, 산림청 공무원, 지방교정청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건설교통부 공무원, 문화재청 공무원, 계량검사 공무원, 세관공무원, 어업감독공무원, 광산보안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 정보통신부 공무원,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문화관광부 공무원,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무원, 농림부 공무원, 산업자원부 공무원, 농촌진흥청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근로감독관, 선장과 해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가정보원직원, 군사법경찰관리 등 그 종류가 50여 가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중 각 소관 행정업무 등에 수반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수만 1만2천여명 정도이다.<sup>3)</sup> 현재 전체 경찰공무원의 수는 10만1천여명 정도인데,<sup>4)</sup> 이는 경찰공무원 중 주로 범죄수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소위 ‘형사’)의 수가 2만여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40여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 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20여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그동안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행정업무와 조직이 비약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특별사법경찰권이 그동안 다소 무분별하게 부여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5)</sup>

3) 신태현·이용상·도정석, “철도산업 치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9권 제4호, 2006, 425-431면;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 성과』,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2006, 4면.

4) 행정자치부, 『2006 행정자치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2006, 81면.

5) 한국과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특별사법경찰의 수가 20-30여 종류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50여 종류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50여 종류의 특별사법경찰 중 사법경찰권이 원칙과 취지 등에 맞지 않게 다소 불합리하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지를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그것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제도적 취지 등을 일반적으로 알아보고, 현행 특별사법경찰 중 제도적 취지 및 원칙, 직무범위, 현실적인 수사권 행사 및 업무처리실적 등의 측면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일부 특별사법경찰, 그 중에서도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 환경관계단속사무 종사 공무원)과 국가보훈처 소속<sup>6)</sup> 특별사법경찰(국가보훈처 공무원)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의 축소 혹은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는 잘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일부 특별사법경찰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죄<sup>7)</sup>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의 특별사법경찰이 존재하고 있다.

- 6) 단, 특사경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소속 특별사법경찰도 부수적으로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산림, 식품, 의약품, 소방, 문화재보호, 계량, 공원관리, 수산업, 공중위생, 환경, 도로, 관광, 청소년보호, 농·수산물품질관리, 농약·비료관리, 하천, 가축전염병, 자동차관리 등과 관련된 20여 종류의 특별사법경찰작용을 행하고 있다(김종수, 「자치경찰의 신규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9-30면).
- 7)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특별법범의 발생건수는 매년 평균 1,216,298건에 달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 대검찰청, 2006, 21면). 이것은 전체범죄의 평균 발생건수 1,988,554건 중 61.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 II.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제도적 취지

### 1.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특별사법경찰은 그 직무범위에 사항적 제한(일정한 범죄유형에 한정되는 것) 혹은 지역적 제한(일정한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다.<sup>8)</sup> 그러므로 이들의 직무는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특별사법경찰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도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포함)의 적용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의 수사에 관한 부분(제195조-제245조)은 일반사법경찰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 피의자신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과 같은 수사상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다만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그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법무부령으로 따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수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 소속행정관서에서 제정한 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이 있을 경우 그것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보다 먼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철도공안 직무집행규정(건설교통부훈령), 철도공안 범죄수사규칙(건설교통부훈령),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환경부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훈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해양수산부훈령), 농약·비료검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농촌진흥청훈령) 등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각 행정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8)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176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69면;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193면; 손봉선, 「범죄수사론(Ⅰ)」, 대왕사, 2005, 97면;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6, 210면.

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직무상 준칙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 소 속   | 특별사법경찰관리                      | 직무범위                                                                                    |
|-------|-------------------------------|-----------------------------------------------------------------------------------------|
| 법무부   |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            |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
| 국방부   | 군사법경찰관리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등                                                            |
| 문화관광부 | 관광지도업무 종사 공무원                 |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
| 농림부   | 농산물품질관리법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범죄                                                |
|       |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 임명 공무원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
| 산업자원부 | 광산보안관                         |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
|       | 대외무역법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
|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등 승인업무 종사 공무원 | 대외무역법 제55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
| 정보통신부 | 무선설비 등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 전파법 중 무선설비 또는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등                         |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 환경부   |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                 |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 및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                           |
|       | 환경관계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규정된 범죄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 |
| 노동부   |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                                                                   |
| 건설교통부 | 철도공안사무 종사 공무원                 |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법                |
|       | 하천감시사무 종사 공무원                 |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사항적 혹은 지역적으로 각각 다르며, 이것은 특사경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의 관장사항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sup>9)</sup> 일반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는 사항적 제한이나 지역적 제한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사법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10)</sup> 따라서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은 서로 중복관계에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의 그것이 일반사법경찰의 그것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양태를 띠고 있다. <표 1>은 현행법상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이러한 직무범위상 중복관계는 관할권 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사법경찰도 모두 수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서는 제39조-제43조에서 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상 공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두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하여 4가지 경우(직접수사, 인계, 인수, 경합)로 각각 나누어 경찰공무원이 행하여야 할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경찰청간에는 상호 중복되는 수사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한계협정고시(경찰청고시)가 체결되어 있고, 국방부와 경찰청간에도 상호 중복되는 수사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경찰

9)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38면.

10)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일반사법경찰을 제치고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사경법 제5조 제35호의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 임명 공무원(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법 제6조의2 제1항의 근로감독관(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각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1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와 함께 해당 범죄에 대해 전속적으로 수사를 행한다.

청고시)이 체결되어 있다.

## 2.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취지

수사작용은 국민의 인신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수반하므로 수사권의 부여는 되도록이면 신중을 기하여 필요최소한도에 그침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사법경찰 외에 특별사법경찰을 따로 두는 이유는 수사의 전문성 또는 긴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중추적 취지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원칙과 긴급성의 원칙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원칙은 특사경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 및 개정이유, 특사경법 등 관련 현행법, 기존 이론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된 것이다.

### 가. 전문성의 원칙

일반사법경찰 외에 특별사법경찰을 따로 두는 것은 주로 그 전문성의 이유 때문이다.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죄를 일반사법경찰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방면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사하게 하는 것이 범죄수사에 더욱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발전에 따라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특수분야의 범죄를 모두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은 관련 행정지식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단속과 수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sup>11)</sup> 그러므로 일반사법경찰은 일반적인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고, 특별사법경찰은 그 중 특수한 분야의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만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범죄유형은 대부분이 특별법범이며, 그 중에서도 행정법상의 행정범이라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주로 행정법에 따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sup>12)</sup> 그 영역에서

11) 양태규, 「수사종결론」, 대왕사, 2004, 71면.

12) 이러한 행정작용 부수성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으로 보기도 한다.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가 담당하는 범죄의 유형도 대부분이 행정법상의 행정법<sup>13)</sup>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은 고도로 전문화·기술화된 분야라 할 수 있어 이러한 행정법상의 행정법(행정형법상의 범죄)을 수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행정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니고서는 해당 범죄의 내용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을 별도로 두어 소관 업무와 관련된 특수행정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사법경찰의 전문성이 아무리 향상된다 하더라도<sup>14)</sup> 이러한 분야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적 전문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도산업사회의 특수행정분야에 요구되는 행정적 전문지식이 없이는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법을 단속·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수사상 지식과 기술은 일반사법경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책무는 앞으로도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sup>15)</sup>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컫는 말이다(이영남·신현기, 「경찰조직관리론」, 법문사, 2003, 321면; 이광운·김민호·강현호,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2002, 6면; 손봉선, 「신경찰학개론」, 백산출판사, 2006, 96면). 그러나 보통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특사경법 등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작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황우·조병인·최응렬,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13면).

- 13) 이러한 행정법상의 행정법은 행정형법(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의 총체)의 영역이기도 하다. 행정형법의 특성 중 하나는 구성요건의 행정종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 구성요건의 행정종속성이란 구성요건 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법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구성요건의 내용을 스스로 완결하지 않고 행정법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도록 참조·지시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형법의 대부분은 벌칙장에서 구성요건을 이러한 참조기법으로 다시 지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형법의 구성요건이 대체로 행정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행정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확보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성요건의 행정종속성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68-69면).
- 14) 일반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사경과제를 들 수 있다. 수사경과제는 일반경과에서 분리된 수사경과를 신설하여 수사경찰의 선발, 승진, 인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상원·김상균,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2006, 506면).

특별사법경찰에 있어서의 이러한 수사의 전문성이라는 특징은 직무범위의 사항적·지역적 제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즉 수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죄유형(주로 소관 분야의 행정법)과 일정한 관할구역(주로 그 소속행정관서 관할구역)에만 직무범위를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특사경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대부분은 직무범위에 이러한 사항적 제한과 지역적 제한을 병합적으로 가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들은 수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식품단속사무 종사 공무원<sup>16)</sup>은 소속행정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 등에 대하여(특사경법 제5조 제10호, 제6조 제6호), 소방공무원<sup>17)</sup>은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에 저촉되는 범죄 등에 대하여(특사경법 제5조 제14호, 제6조 제10호), 문화재보호사무 종사 공무원<sup>18)</sup>은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에 대하여(특사경법 제5조 제16호, 제6조 제11호), 공중위생단속사무 종사 공무원<sup>19)</sup>은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특사경법 제5조 제23호, 제6조 제18호) 수사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데,

- 
- 15)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이므로 일반적 수사업무에 관한 지식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긴급체포와 체포영장·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방법, 수사서류 작성방법 등은 상대적으로 미숙할 수 있는 것이다(전현준,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과제」, 『수사연구』, 제240호, 2003, 36면; 전형우·이슬기·박경란, 「현장취재, 특별사법경찰관리: 교도소, 소방, 세관, 철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 청소년위원회」, 『수사연구』, 제240호, 2003, 16면). 이러한 점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무교육 실시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박미숙,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40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등의 현행 법령상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실시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 16)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 17)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18) 문화재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 19)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그 직무범위에 공통적으로 사항적 제한과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수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 한정될 때에 기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사법경찰의 권한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임에 비해, 특별사법경찰은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직무범위에 사항적·지역적 제한이 존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있어 사법경찰권 부여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데, ‘①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범위에 사항적·지역적 제한을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둔다. ② 직무범위에 사항적·지역적 제한을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것은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제들이다. 이것을 ‘전문성의 원칙’이라 부르기로 한다.

#### 나. 긴급성의 원칙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전문성의 원칙에 의해 사항적 제한과 지역적 제한을 병합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사항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에는 전체 50여 종류 중 10여 종류가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sup>20)</sup>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특사경법 제3조 제4항), 철도공안사무 종사 공무원<sup>21)</sup>이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에 대하여(특사경법 제5조 제13호, 제6조 제9호), 국가보훈처 공무원<sup>22)</sup>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특사경법 제5조 제22호, 제

20) 행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21)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6조 제17호), 해선의 선장이나 항공기의 기장이 해선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특사경법 제7조), 등대사무 종사 공무원<sup>23)</sup>이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특사경법 제5조 제12호, 제6조 제8호) 수사권을 가지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직무범위에 공통적으로 지역적 제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이들은 형법범이든 특별법범이든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이유는 바로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등대, 열차, 해선, 항공기,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공원구역 등은 일반사법경찰관서(경찰서, 순찰지구대 등)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범죄 발생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항적 제한은 가하지 않고 지역적 제한만 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이러한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사권이 부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때 전문성의 원칙에 이어 특별사법경찰제도에 있어 사법경찰권 부여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데, ‘①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둔다. ②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것은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라는 명제들이다. 이것을 ‘긴급성의 원칙’이라 부르기로 한다.

23)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 III.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문제점

#### 1.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 가. 환경부

##### 1)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로는 먼저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을 들 수 있다. 이에는 ‘자연공원법 제34조<sup>24)</sup>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sup>25)</sup>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특사경법 제5조 제18호)’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그 소속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야 하는 지명특별사법경찰관리<sup>26)</sup>이다.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은 그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sup>27)</sup> 안에서 발생하는 ① 자연

24)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5)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자연공원법 제4조 제1항). 이 때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바로 공원관리청이라고 부른다. 즉 공원관리청이라는 용어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행정관청을 모두 총괄하여 부르는 법률상 명칭이라 할 수 있다.

26)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태양에 따라 크게 ① 법률상 당연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지명에 의해 비로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로 나눌 수 있다(김희옥, “특별사법경찰관리”, 『고시연구』, 제197호, 1990, 132면;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경찰대학교재판찬위원회, 1998, 52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121면; 김충남, 『경찰수사론』, 박영사, 2004, 68면; 이인권, 『강제조사의 한계와 대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5면). 이것을 각각 법정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특별사법경찰관리라 부른다.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명특별사법경찰관리이며,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 근로감독관, 해선의 선장, 항공기의 기장 등 일부 특별사법경찰관리만이 법정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할 수 있다.

공원법에 규정된 범죄 ②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다(특사경법 제6조 제13호).

이 때 ①의 경우에는 직무범위가 사항적·지역적 제한을 받으므로 전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권이 부여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수사에 있어 담당 분야의 행정적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제84조에 규정된 범죄를 말하는데, 이에는 주로 허가·신고의무위반 관련범죄,<sup>27)</sup> 자연공원 형상·시설훼손 등 관련범죄<sup>28)</sup>가 해당된다. 즉 이러한 자연공원법 위반사범의 수사에는 자연공원법상의 관련 전문용어와 그 명확한 기준, 그리고 관련 실무와 정보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능력과 지식이 요구되므로, 이를 일반사법경찰 등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 방면에 정통한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맡게 하는 것이 수사 전문성과 그로 인한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효과적이기에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자연공원법 위반 범죄는 그 발생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자연공원법 위반 범죄는 각각 249건, 258건에 불과하였다.<sup>30)</sup> 이 수치는 월평균 20여건 정도에 해당하는 낮은 발생건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②의 경우는 긴급성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는 사항적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수

27)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자연공원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이라 한다.

28)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행위(자연공원법 제82조 제1호),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행위(자연공원법 제83조 제3호), 제3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자연공원법 제84조 제4호) 등을 들 수 있다.

29)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자연공원법 제8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자연공원법 제8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자연공원법 제84조 제3호) 등을 들 수 있다.

30)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대검찰청, 2005, 54면; 대검찰청, 전계서(「범죄분석 2006」), 54면.

사는 행정적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장소는 일반사법경찰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일 수 있으므로 범죄 발생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사법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항적 제한과 지역적 제한이 동시에 존재하여 얼핏 전문성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수사권이 부여된 경우라 볼 것이다.

그러나 긴급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sup>31)</sup>에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또한 그 현행범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그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 때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누구든지 영장없이 가능하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규정된 범죄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sup>32)</sup>에 의하여 결국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범칙금납부통고처분대상이므로, 실제로는 특별사법경찰(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면 즉시 그 행위의 중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위반사실내용에 대한 확인서나 자인서 등을 받아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인계하게 된다.

## 2) 환경관계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또 다른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로는 환경관계단속사무 종사 공무원을 들 수 있다. 이에는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특사경법 제5조 제24호)’이 해당되는데, 이들 역시 그 소속관서장의 제청

31)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규정된 범죄를 말하는데, 그 중 자연공원 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형의 예로는 광고물 무단첨부, 오물방치, 자연훼손,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32)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야 하는 지명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환경관계단속사무 종사 공무원은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범죄에 한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제61조 제1호에 한함), 지하수법(제37조 제7호에 한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한함), 야생동·식물보호법, 악취방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다(특사경법 제6조 제19호).

그러므로 이들의 직무범위는 사항적·지역적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전문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권이 부여된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 수사에 있어 담당 분야의 행정적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범죄<sup>33)</sup>의 수사업무는 관련 전문용어와 그 명확한 기준,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공정과 오염방지시설의 운전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 복잡한 검사와 검체기술의 습득 등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일반 경·검찰 인력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단속 공무원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sup>34)</sup>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환경범죄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환경범죄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등에 중점을 두는 일반적인 단속활동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33) 환경범죄의 특성으로는 상호인과관계성, 간접성, 지속성, 완만성, 전문성, 복잡성, 다양성, 불명확성, 확장성 등을 들 수 있다(김동현, 「환경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전문화 방안」, 치안연구소, 1996, 20-24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64-71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0면).

3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1,074명에 이른다(김성식, 「실무적 관점에서 본 현행 환경범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84면).

이들은 대기배출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진동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유독물 등록업소 등에 대한 각종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사용정지, 폐쇄명령, 고발,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는 1천여명에 이르는데,<sup>37)</sup>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범을 비롯한 환경범죄의 실제 수사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38)</sup> <표 2>는 2005년을 기준으로 주요 환경관련법 위반 사범 중 특별사법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주요 환경관련법 위반 사범 중 특별사법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현황(2005년)  
(단위: 건)

| 종 류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 위반     | 오수처리법 위반       |
|-------------|----------------|----------------|--------------|---------------|----------------|
| 총 발생건수      | 3,418          | 2,274          | 174          | 1,807         | 799            |
| 특별사법경찰 처리건수 | 468<br>(13.7%) | 323<br>(14.2%) | 9<br>(5.2%)  | 128<br>(7.1%) | 199<br>(24.9%) |

\* 자료: 대검찰청, 전제서(「범죄분석 2006」), 54-147면.

- 주: 1. 오수처리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괄호 안은 해당 범죄의 총 발생건수 중 특별사법경찰이 처리한 건수의 비율임.

<표 2>를 보면 2005년도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처리건수는 평균 약 225건으로서 약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일반사법경찰 등이 처리한 사건이다. 이는 전체 특별사법경찰의 평균 처리건수의 비율이 5% 정도임을 감안하면<sup>39)</sup>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이 수사권을 행

35) 이인수, “환경사법경찰운영의 발전방향(Ⅰ),” 『폐기물처리Newsletter』, 제92호, 2004, 64-65면.

36)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5(제18호)」, 환경부, 2005, 591-596면.

37) 이인수, 전제논문, 64-65면.

38)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사례집 2003」, 환경부, 2003, 261-301면.

39) 2005년도에 발생한 범죄 총 1,893,896건 중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41,840건(2.2%), 경찰(해양경찰 포함)이 처리한 사건은 1,761,178건(93.0%), 특별사법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사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환경부훈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sup>40)</sup> 여기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상호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41)</sup>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환경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이들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환경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다. 그리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조).

#### 나. 국가보훈

국가보훈처 소속 특별사법경찰로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을 들 수 있다. 이에는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sup>42)</sup>의 공무원(특사경법 제5조 제22호)’이 해당되는데, 이들 역시 그 소속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지명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약칭함)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모든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진다(특사경법 제6조 제17호, 국가유공자예우법 제81조). 그러므로 이들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범죄가 이러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기만 하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란 각각 진료시설,<sup>43)</sup> 정양시설,<sup>44)</sup> 양로시설,<sup>45)</sup> 양육시설<sup>46)</sup>을 말한다.

90,877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전거서(「범죄분석 2006」), 50-146면].

40) 환경부, 「환경범죄수사실무편람」, 환경부, 1998, 251면; 환경부, 「환경사범 수사 우수사례집 2001」, 환경부, 2001, 247면.

41) 오창배, “일본에 있어서의 환경행정기관과 환경경찰에 의한 환경형법의 집행과정: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의 집행과정을 소재로 해서”, 「치안정책연구」, 제15호(2001. 11).

42)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가 있다(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43)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이들은 그 직무범위에 있어 지역적인 제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긴급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진료시설, 정양시설, 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은 주로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서 일반사법경찰관서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보아 범죄 발생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단, 범죄의 주체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범위에 있어 지역적 제한 이외에 인적 제한이 부수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할 것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은 제외)에 걸린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를 행하는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말한다(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 제1항). 단, 국가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므로(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 제2항), 이 때의 진료시설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 않는 의료시설도 포함된다.

- 44)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靜養)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국가유공자예우법 제43조 제1항). 단, 국가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므로(국가유공자예우법 제43조 제2항), 이 때의 정양시설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 등도 포함된다.
- 45)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를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단,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를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국가유공자예우법 제63조). 단, 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국가유공자예우법 제65조 제1항), 이 때의 양로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다.
- 46)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를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국가유공자예우법 제64조). 단, 국가보훈처장은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국가유공자예우법 제65조 제1항), 이 때의 양육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다.

이러한 의료시설 등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4,029건이었는데, <표 3>은 그 주요한 발생범죄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의료시설내 발생범죄의 현황(2005년) (단위: 건)

| 절 도              | 폭처법<br>위반        | 업무상<br>과실치사상  | 상 해           | 폭 행           | 강 간          | 손 괴          |
|------------------|------------------|---------------|---------------|---------------|--------------|--------------|
| 1,713<br>(42.5%) | 1,025<br>(25.4%) | 387<br>(9.6%) | 337<br>(8.4%) | 180<br>(4.5%) | 80<br>(2.0%) | 56<br>(1.4%) |

\* 자료: 대검찰청, 전계서(『범죄분석 2006』), 214-215면.

주: 1. 폭처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말함.

2. 괄호 안은 전체 의료시설 발생범죄 중 해당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표 3>을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의료시설 등에서 발생한 범죄 중 절도가 1,713건(42.5%)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25건(25.4%),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387건(9.6%), 상해가 337건(8.4%), 폭행이 180건(4.5%) 등의 순이었다. 결국 의료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약 40%는 절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상해, 폭행 등 폭력관련 범죄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수사활동이 주로 절도 및 폭력 관련 범죄에 치중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특별사법경찰의 문제점

### 가. 환경부 - 공원 업무 종사 공무원

#### 1) 긴급성의 원칙에 위배된 사법경찰권 부여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에는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과 환경관계단속사무 종사 공무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중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의 경우에는 긴급성의 원칙에 어긋난 사법경찰권 부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그 관할 공원구

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①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 ②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다. 이 때 ①의 경우는 직무범위에 사항적·지역적 제한이 가해져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②의 경우는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기는 하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일반사법경찰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 일반사법경찰관리처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긴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경우는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긴 하였으나, 지역적 제한에 사항적 제한이 부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하고 어정쩡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다른 특별사법경찰, 즉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철도공안사무 종사 공무원이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법에 대하여, 해선의 선장이나 항공기의 기장이 해선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등대사무 종사 공무원이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 등과 대비된다. 즉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다른 특별사법경찰과는 달리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은 그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지 않고 사항적 제한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2) 경미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이 그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에 대하여 가지는 사법경찰권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

에 특별히 한정된 수사권 부여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이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한 경미사건, 즉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사안의 경미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 체포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처분에 수반하여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강제처분, 즉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도 허용되지 않게 된다. 결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있어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상당 부분의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수사기관의 권한 중 가장 핵심적이라 뚜렷한 특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경미범죄에 한정하여 별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조치는 그 어떤 특별한 실익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상 범죄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므로 경미범죄 중에서도 경미범죄에 해당한다. 거기다가 그 현행법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무범위는 더욱 축소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범칙금납부통고처분대상이므로, 실제로는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이 경범죄처벌법상 범죄의 현행범인을 발견하면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위반사실내용에 대한 확인서나 자인서 등을 받아 경찰관서로 사건을 인계하는 데에 그칠 뿐,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피의자신문 등의 대부분의 수사상 처분은 행할 여지가 없다. 즉 이들의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수사권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은 사실상 극히 좁다고 할 수 있어 사법경찰권 부여의 취지와 실제적 실효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관부처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의미를 주민등록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권한<sup>47)</sup>에서 찾기도 한

다.<sup>48)</sup> 이것은 ① 현행법 체포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한 경미사건 중 예외사유(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있어서 범인의 주거부정 여부 ② 범칙금납부통고처분대상 사건의 경찰관서 인계전 처리 절차에 있어서 범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체포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sup>49)</sup> 주민등록증 제시의 요구는 상대방의 임의에 따라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범인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절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한 경미사건 중 예외사유인 범인의 주거부정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체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즉시 검사 또는 일반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권한 정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굳이 그러한 경미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실익은 현저히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단속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단속자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위하를 가하여 단속의 편의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실질적 수사활동 보다는 지도 및 단속의 편의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50)</sup> 그러므로 이러한 미미한 효과를 위해 국민의 인신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할 수반하는 수사권을 이들에게 따로 부여한 것은 특별한 취지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조치라 볼 수밖에

47)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48) 손영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의 부여에 관하여”, 『법제』, 제483호, 1998, 111-112면.

49)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50) 국립환경연구원, 『공원관리반』,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2001, 84면.

없을 것이다.

나. 국가보훈 - 국가보훈 공무원

1) 긴급성의 원칙에 위배된 사법경찰권 부여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만 수사권이 있으므로 그 권한과 직무범위에 제한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전문성의 원칙에 의해 사항적 제한과 지역적 제한이 병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는 긴급성의 원칙에 의해 그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 철도공안사무 종사 공무원, 해선의 선장이나 항공기의 기장, 등대사무 종사 공무원 등이 바로 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주로 그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 때문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 철도시설, 열차, 해선, 항공기, 등대 등 일반사법경찰관서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칠 수 없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들에게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사법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놓았다. 결국 이 경우의 특별사법경찰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그 전문성보다는 장소적 특수성과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적 특수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지역적 직무범위만을 두어 모든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긴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취지와 목적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적어도 그 관할구역 내에서는 일반사법경찰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해 검찰이나 일반경찰관서 등의 권한이 잘 미칠 수 없어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을 기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긴급성의 원칙의 취지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중에는 그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수사관할구역의 위치나 환경, 상황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의 수사관할구역인 ‘교정시설 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한국에 있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내를 말하는데, 이러한 장소는 시설의 특수한 목적상 일반경찰관서 등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서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철도공안사무 종사 공무원의 수사관할구역인 ‘역구내 및 열차 안’이라고 하는 장소 역시 일반경찰관서 등의 권한이 잘 미칠 수 없으므로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해선의 선장이나 항공기의 기장의 수사관할구역인 ‘해선 또는 항공기 내’, 그리고 등대사무 종사 공무원의 수사관할구역인 ‘등대 내’라고 하는 장소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수사관할구역인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라고 하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은 주로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서, 일반경찰관서 등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의 편의와 접근성 등을 위해 대부분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의 내·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곳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가 많아 다른 동종의 일반시설과 그 어떤 차이점이나 특수성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또한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 내에서 더욱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니다. 즉 이러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별다른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이러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모든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권을 부여한 조치는 긴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범죄주체에 대한 특수한 인적 제한의 존재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두지 않고 범죄주체에 대한 인적 제한을 부수적으로 두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것도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힘든 부분이다. 만약 처음에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라면 지역적 직무범위만을 가지는 다른 특별사법경찰처럼 수사관할구역 내의 모든 사람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50여 종류의 특별사법경찰 중 그 직무범위에 부수적으로 범죄주체상 인적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유일하다.

이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그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면,<sup>51)</sup> 굳이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이들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특별히 수사권을 행사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평상시 국가보훈처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을 뿐, 이러한 시설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대처에 대한 긴급성과 효율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이들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보훈처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그 특별한 취지, 목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실효성까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 국가유공자예우법 제81조 등에 의해 이렇듯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취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러한 범죄주체상 인적 제한을 두었다면 수궁하기 어려운 것이다.

## IV. 특별사법경찰의 개선방안

### 1. 환경부 - 공원 업무 종사 공무원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에는 ① 사법경찰권을 일부 폐지하는 방안 ② 긴급성의 원칙에 기한 완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가. 사법경찰권을 일부 폐지하는 방안

먼저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중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이 그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①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 ②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법에 대하여 가지는 사법경찰권 중, ②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②의 직무범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취지인 긴급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미범죄에 특별히 한정된 사법경찰권 부여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수사상 처분은 행하여질 여지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이에 대한 수사권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②에 대한 사법경찰권은 사실상 지도 및 단속의 편의수단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작용은 전형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권 부여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신중을 기하여 행하여야만 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사법경찰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로는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근거 규정들을 개정하여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

범에 대한 직무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인 특사경법 제6조 제13호와 이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또다른 근거규정인 자연공원법 제34조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이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자인서 등을 받아 일반사법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sup>52)</sup>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한국과 유사한<sup>53)</sup>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환경부 소속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의 경우처럼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경미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공무원에게 그 긴급성을 인정하여 일정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등 경미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의 환경부 소속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긴급성의 원칙에 기한 완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반대로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에게 긴급성의 원칙에 기한 완전한

52) 그러나 현재에도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결국 이러한 방안은 현실에 맞게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3) 특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한국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형사소송법 역시 제190조에서 ‘삼림, 철도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직원(司法警察職員)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기관을 따로 인정하고 있다(福井厚,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0, 54면; 寺崎嘉博・長沼範良・田中開,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1, 26-27면; 三井誠・酒卷匡, 「刑事手続法」, 有斐閣, 2001, 5-6면). 일본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역시 한국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사항이나 특정장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항적 혹은 지역적 제한을 받는다(정진환, 「비교경찰제도」, 백산출판사, 2006, 283면). 독일과 프랑스 역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 등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을 규정하고 있다(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1세기사, 2004, 142-145면; Schenke, W. R.,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1998, 10-11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이들의 관할 구역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이라고 하는 장소에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을 인정하여 일반사법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들의 직무범위는 ‘그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되며, 긴급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게 되어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범죄가 이러한 장소 내에서 발생하기만 하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로는 특사경법 및 자연공원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는 미국 내무부 산하의 국립공원청(NPS, National Park Service) 소속 공원경찰(Park Police)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 및 수사, 교통정리, 관광객 안내와 보호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sup>54)</sup> 긴급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성의 원칙에 기한 특별사법경찰권은 그 전문성보다는 장소적 특수성과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부여에 있어 다소 신중을 기함이 옳다.

## 2. 국가보훈 - 국가보훈 공무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도 이상과 같은 갖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는 사법경찰권 폐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적 격리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그러한 시설 내에 지역적 제한만을 두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조치는 긴급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역적 제한 이외에 범죄주체에 대한 인적 제한을 부수적으로 두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만 한하여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들에 의한 실제적인 수사권 행사도 거의 이루

54)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2, 191면; DOI, DOI mission, Retrieved July 11, 2007, from <http://www.doi.gov/secretary/mission.html>; NPS, About us, Retrieved July 11, 2007, from <http://www.nps.gov/aboutus/index.htm>.

어지고 있지 않다. 수사작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권 부여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취지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법경찰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위한 입법적 조치로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근거 규정들을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특사경법 및 국가유공자에우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는 법률개정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유공자에우법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사법경찰 등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한국과 유사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역시 살펴보면, 한국의 국가보훈처 소속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경우처럼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이처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 행정공무원에게 그 긴급성을 인정하여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정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의 국가보훈처 소속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 V.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부 소속 공원관리업무 종사 공무원과 국가보훈처 소속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은 긴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미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현실적인 수사권 행사의 불능 및 미비, 불합리한 범죄주체상 인적

제한 등의 갖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부 수사권 폐지 및 신규 부여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한 입법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이버 범죄 수사권 부여,<sup>55)</sup>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관련 범죄 수사권 부여,<sup>56)</sup>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병역 및 입영기피 사범 관련 수사권 부여,<sup>57)</sup>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범죄 수사권 부여,<sup>58)</sup> 법원경비대에 대한 수사권 부여<sup>59)</sup>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나 원칙 등이 상당 부분 무시된 채 주로 관련 부처간 이기주의와 단속의 편의성 및 효율성 등에 근거하여 소관 업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었을 뿐, 이미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합리성, 축소 및 폐지 등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 결과 한국의 특별사법경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기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여된 사법경찰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칙과 취지에 위배되고 갖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권한의 축소, 폐지, 변경 등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이외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특별사법경찰 중에는 제도적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미범죄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거나 사인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 전문성 혹은 긴급성의 취지 등에 비추어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이

55) 김규성, “정통부 S/W불법복제 사법경찰권 왜 필요한가?”, 『수사연구』, 제240호, 2003, 31면; 한국일보, 2004. 5. 7, ‘정통부 수사권 확대 논란’.

56) 한국경제신문, 2005. 5. 10, ‘공정위 사법경찰권 추진 논란’.

57) 매일경제신문, 2002. 9. 6, ‘병무청에 수사권 부여’.

58) 경향신문, 2006. 2. 28, ‘교사에 제한적으로 경찰권 부여’.

59) 매일경제신문, 2007. 1. 16, ‘석궁테러사건으로 본 법관보호 현주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특별사법경찰의 교육이나 훈련, 현장실무처리실태와 관련 업무수행상 개선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적인 법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한 연구도 요망된다. 사법경찰이나 수사권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그 대부분이 일반사법경찰에만 치중되어 있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사실상 학문적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좀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규성, “정통부 S/W불법복제 사법경찰권 왜 필요한가?”, 『수사연구』, 제240호(2003. 10).
- 김동현, 『환경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전문화 방안』, 서울: 치안연구소, 1996.
- 김성식, 『실무적 관점에서 본 현행 환경범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 청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 김중수, 『자치경찰의 신규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충남, 『경찰수사론』, 서울: 박영사, 2004.
- 김충남, 『경찰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6.
- 김희옥, “특별사법경찰관리”, 『고시연구』, 제197호(1990. 8).
-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성과』, 과천: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2006.
-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용인: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
- 국립환경연구원, 『공원관리반』, 인천: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2001.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서울: 대검찰청, 2005.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 서울: 대검찰청, 2006.
- 박미숙,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배종대 · 이상돈,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2006.
-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Ⅱ」, 과천: 법무부, 1990.
- 손봉선, 「범죄수사론(Ⅰ)」, 서울: 대왕사, 2005.
- 손봉선, 「신경찰학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2006.
- 손영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의 부여에 관하여”, 「법제」, 제483호(1998. 3).
- 신태현 · 이용상 · 도정석, “철도산업 치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9권 제4호(2006. 8).
- 양태규, 「수사종결론」, 서울: 대왕사, 2004.
- 오창배, “일본에 있어서의 환경행정기관과 환경경찰에 의한 환경형법의 집행과정: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의 집행과정을 소재로 해서”, 「치안정책연구」, 제15호(2001. 11).
- 이광윤 · 김민호 · 강현호, 「행정작용법론」, 서울: 법문사, 2002.
- 이상원 · 김상균,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2006. 6).
- 이영남 · 신현기, 「경찰조직관리론」, 서울: 법문사, 2003.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2.
- 이인권,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이인수, “환경사법경찰운영의 발전방향(Ⅰ)”, 「폐기물처리Newsletter」, 제92호(2004. 5).
-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7.
- 이황우 · 조병인 · 최응렬, 「경찰학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임동규, 「형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2004.
-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서울: 21세기사, 2004.
- 전현준,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과제”, 「수사연구」, 제240호(2003. 10).
- 전형우 · 이슬기 · 박경란, “현장취재, 특별사법경찰관리: 교도소, 소방, 세관, 철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 청소년위원회”, 「수사연구」, 제240호(2003. 10).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서울: 백산출판사, 2006.

- 진계호, 「형사소송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행정자치부, 「2006 행정자치 통계연보」, 서울: 행정자치부, 2006.
- 허경미, 「경찰행정법」, 서울: 법문사, 2003.
- 홍효식, 「프랑스 사법경찰의 수사방법 연구」, 서울: 대검찰청, 2006.
- 환경부, 「환경범죄수사실무편람」, 과천: 환경부, 1998.
- 환경부, 「환경사범 수사 우수사례집 2001」, 과천: 환경부, 2001.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5(제18호)」, 과천: 환경부, 2005.
-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사례집 2003」, 과천: 환경부, 2003.
- 경향신문, 2006. 2. 28, '교사에 제한적으로 경찰권 부여'.
- 매일경제신문, 2002. 9. 6, '병무청에 수사권 부여'.
- 매일경제신문, 2007. 1. 16, '식궁테러사건으로 본 법관보호 현주소'.
- 한국경제신문, 2005. 5. 10, '공정위 사법경찰권 추진 논란'.
- 한국일보, 2004. 5. 7, '정통부 수사권 확대 논란'.
- DOI, DOI mission, Retrieved July 15, 2007, from <http://www.doi.gov/secretary/mission.html>
- NPS, About us, Retrieved July 11, 2007, from <http://www.nps.gov/aboutus/index.htm>
- Schenke, W. R., 「독일경찰법론」, 서울: 세창출판사, 1998.
- 福井厚, 「刑事訴訟法」, 東京: 有斐閣, 2000.
- 寺崎嘉博・長沼範良・田中開, 「刑事訴訟法」, 東京: 有斐閣, 2001.
- 三井誠・酒卷匡, 「刑事手続法」, 東京: 有斐閣, 2001.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 Centering arou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aek, Chang-Hyu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eimyung College)

There are about 50 different sort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n Korea. This fact implies that Korea has developed rapidly through swift growth of population, economic scale, and administration. But this fact also implies that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been indiscreetly vested without respect to its ground rule and purpose. So I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government employees engaged in park management affairs and environment connection regulatio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government employees engaged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I especially presented its vario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government employees engaged in park management affair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supposed to be partially abolished or be consummated by the principle of exigency. And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government employees engaged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s also supposed to be abolished. Because their investigation authorities have various kinds of problems with violation of ground rule(the principle of exigency), allowance for investigation authority into minor offense, impossible and petty performa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unreasonable personal restriction on the criminal subject. For it, the revision of correlation

law(The Act about Personnel and Duty Range of Special Judicial Police, etc.) is necessary. Unreasonable and titular investigation authorities should be improved for prevention of its abuse.

주제어 :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환경부, 국가보훈처, 수사

Keywords : judicial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vestigation